

통계

###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

(사 : 사무소수, 회 : 회원수)

2004년 10월말

구 분	개 인 사 무 소										법 인 사 무 소										용역 사무소	합 계		비율(%)						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이상	소 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이상	소 계	사 회	사 회	사 회	사 회																		
합계	5,021	5,021	242	484	44	132	3	12	0	0	5,310	5,649	1,397	1,397	263	520	93	279	28	109	18	90	7	42	5	35	6	54	1,817	2,526	9	9	7,136	8,184	100.0%	100.0%	
서울	1,250	1,250	69	138	18	54					1,337	1,442	842	842	169	338	55	165	17	68	8	40	4	24	5	35	4	35	1,104	1,547	8	8	2,449	2,997	34.3%	36.6%	
부산	532	532	29	58	3	9					564	599	65	65	14	28	5	15	2	8	4	20	2	12					92	148			656	747	9.2%	9.1%	
대구	392	392	38	78	12	36	1	4			443	510	27	27	12	24	11	33			4	20							54	104			497	614	7.0%	7.5%	
인천	226	226	3	6							229	232	44	44	7	13														51	57			280	289	3.9%	3.5%
광주	192	192	3	6							195	198	33	33	10	20	3	9	4	16			1	6					51	84			246	282	3.4%	3.4%	
대전	209	209	18	36	3	9					230	254	25	25	6	12	2	6									1	11	34	54			264	308	3.7%	3.8%	
울산	132	132	9	18	5	15	1	4			147	169	14	14	1	2	1	3											16	19			163	188	2.3%	2.3%	
경기	639	639	27	52							666	691	217	217	26	47	8	25			1	5							252	294			918	985	12.9%	12.0%	
강원	154	154	5	10							159	164	23	23	3	6					1	5							27	34			186	198	2.6%	2.4%	
충북	160	160	9	18							169	178	18	18	6	12	0	0	2	8							1	8	27	46			196	224	2.7%	2.7%	
충남	147	147	3	6							150	153	30	30			2	6	1	4									33	40			183	193	2.6%	2.4%	
전북	183	183	1	2	1	3					185	188	6	6	2	4	4	11	2	5									14	26			199	214	2.8%	2.6%	
전남	131	131									131	131	9	9			1	3											10	12			141	143	2.0%	1.7%	
경북	259	259	15	30	0	0					274	289	21	21	1	2	1	3											23	26	1	1	298	316	4.2%	3.9%	
경남	313	313	12	24	2	6	1	4			328	347	17	17	6	12													23	29			351	376	4.9%	4.6%	
제주	102	102	1	2							103	104	6	6															6	6			109	110	1.5%	1.3%	

### 건축사회별 회원현황

구 분	회 원				준회원
	건축사	2급	계	비 율	
합 계	8,174	10	8,184	100.0%	27
서울	2,994	3	2,997	36.6%	15
부산	746	1	747	9.1%	8
대구	614	0	614	7.5%	0
인천	289	0	289	3.5%	0
광주	282	0	282	3.4%	0
대전	307	1	308	3.8%	0
울산	188	0	188	2.3%	0
경기	983	2	985	12.0%	2
강원	198	0	198	2.4%	0
충북	224	0	224	2.7%	1
충남	190	3	193	2.4%	0
전북	214	0	214	2.6%	0
전남	143	0	143	1.7%	0
경북	316	0	316	3.9%	1
경남	376	0	376	4.6%	0
제주	110	0	110	1.3%	0

###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

구 분	개인사무소	법인사무소	용역사무소	합 계	비 고
회 원 수	5,649	2,526	9	8,184	
비 율	69.0%	30.9%	0.1%	100.0%	
사무소수	5,310	1,817	9	7,136	
비 율	74.4%	25.5%	0.1%	100.0%	

##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

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. 이번 호에서는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각종 공제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
### 1. 근로소득공제 확대 (소득세법 제47조, 부칙2003.7.30개정 제2조 제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급여액이</li> <li>- 500만원 이하 : 전액</li> <li>- 500~1,500만원 : 47.5%</li> <li>- 1,500~3,000만원 : 15%</li> <li>- 3,000~4,500만원 : 10%</li> <li>- 4,500만원 초과 : 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급여액이</li> <li>- 500만원 이하 : 전액</li> <li>- 500~1,500만원 : 50%</li> <li>- 1,500~3,000만원 : 15%</li> <li>- 3,000~4,500만원 : 10%</li> <li>- 4,500만원 초과 : 5%</li> </ul>

### 2.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(소득세법 제50조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합소득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</li> <li>- 직계존속으로서 60세(여자55세)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자</li> <li>-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양가족의 범위 확대</li> <li>- 계부·계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</li> <li>- 요건 :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 관계인이 증명되는 자</li> <li>-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</li> </ul>

### 3.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(소득세법 제50조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</li> <li>-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·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(예)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·의료비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·이혼·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·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</li> <li>-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</li> </ul>

### 4.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(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3호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료비 소득공제</li> <li>- 공제 한도 : 연 500만원</li> <li>※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·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</li> <li>※ 의료비공제금액 :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여 지급한 의료비</li> </ul>

### 5.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(소득세법 제59조, 부칙2003.7.30 개정 제2조 제2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출세액이</li> <li>- 50만원 이하 : 50% 공제</li> <li>- 50만원 초과 : 250,000원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</li> <li>• 공제 한도 : 45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액공제를 상향조정 (산출세액이)</li> <li>- 50만원 이하 : 55% 공제</li> <li>- 50만원 초과 : 275,000원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</li> <li>• 공제 한도 상향조정 : 50만원</li> </ul>

### 6.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(소득세법 제51조 제항 제4호,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움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</li> <li>- 대상 : 여성인 근로자</li> <li>- 공제금액 : 연 50만원</li> <li>-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</li> <li>- 대상 :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</li> <li>- 공제금액 : 연 100만원</li> <li>-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</li> <li>•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·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</li> <li>- 한도 : 월 10만원</li> </ul>

### 7.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(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호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</li> <li>-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</li> <li>· 유치원생 이하 : 연 150만원</li> <li>· 초·중·고생 : 연 200만원</li> <li>· 대학 생 : 연 50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</li> <li>· 유치원생 이하 : 연 200만원</li> <li>· 초·중·고생 : 연 200만원</li> <li>· 대학생 : 연 700만원</li> </ul>

### 8. 결혼·이사·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(소득세법 제52조 제9항)

종 전	개 정
<p>(신 설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제대상</li> <li>-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</li> <li>-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</li> <li>-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</li> <li>• 공제요건</li> <li>-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</li> <li>• 공제금액</li> <li>- 각 사유당 100만원</li> </ul>

### 9.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(조세특례제한법 제8조2, 동법시행령 제6조2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</li> <li>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</li> <li>- 월정액급여의 40%</li> <li>② 소득공제</li> <li>- 공제대상</li> <li>·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외국인임직원</li> <li>·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하는 외국인임직원</li> <li>- 공제비용</li> <li>·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</li> <li>· 월세 지출액</li> <li>- 공제 한도</li> <li>· (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 공제비용)의 4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, ② 중에서 선택</li> <li>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% 적용하여 분리과세</li> <li>- 비과세 공제·감면 적용 배제</li> <li>② 기본세를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</li> <li>- 비과세를 : 근로소득의 30%</li> <li>※ 근로소득 = 급여총액에서 과세외를 차감한 금액</li> <li>※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- 상기 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</li> <li>※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</li> <li>-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 신청</li> <li>- 제출서류 :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(별지8호서식)</li> </ul>

### 10.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(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·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</li> <li>-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</li> <li>• 차입금 요건 (시행령 제112조)</li> <li>- 상환기간 : 만기 10년 이상 (거처기간포함)</li> <li>-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</li> <li>• 공제한도(소득세법 제52조 제5항)</li> <li>- 연 60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</li> <li>-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(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)</li> <li>• 차입금 요건 조정</li> <li>- 상환기간 : 15년 이상</li> <li>- 거처기간 : 3년이하</li> <li>-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</li> <li>• 공제한도 확대</li> <li>- 연 1천만원</li> </ul>

### 1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외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공제대상</li> <li>- 신용카드·직불카드 사용금액</li> <li>-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</li> <li>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</li> <li>- 연 급여의 10%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인분하여 아래의 공제를 적용</li> <li>· 신용카드 등 : 20%</li> <li>· 직불카드 : 3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공제대상 확대</li> <li>- 기명신불카드03, 12, 1 이후 사용분</li> <li>- 현금영수증 (05.1.10후 사용분)</li> <li>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일원화</li> <li>- 신용카드, 직불카드 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%를 초과하는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</li> <li>• 지로(GIRO) 범위 명확화</li> <li>-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</li> <li>· 지로이용기반의 상호, 대표자 성명, 사업자주번등록번호</li> <li>· 지로납부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</li> </ul>

### 12.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(소득세법 제52조 제항 제4호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</li> <li>- 학원, 보육시설</li> <li>- 초·중등교육법·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</li> <li>-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(학원을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)</li> <li>· 독학취득 취득 교육과정</li> <li>· 독학에의한취득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</li> <li>· 학점은행제 교육과정</li> <li>-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</li> <li>· 공제 한도 : 연 700만원</li> </ul>

※ 지급조서(원천징수영수증)는 매년 2월말까지 제출(단, 폐업 시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)

**자료제공 및 문의**  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564)  
E-mail : ho25400@nts.go.kr